



제 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비상설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6584호)

2025.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7조)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정 부

나. 제 출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었던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1. 공공디자인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7조)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음(안 제7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u>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회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u>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회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u>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u> <u>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u> <u>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u> <u>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공디자인 추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협의체 자문 등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장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10
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9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며, 나머지 민간
위원은 2년의 임기로 위촉되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²⁾.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
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여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 위원회는 2022년 2기 위원회³⁾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정부 위원회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2기 위원회는 활동 기간 2년 동안 3회의 본회의를 개최하였음.

○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해산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려는 것임.

- 참고로, 2022년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발표·확정⁴⁾하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안⁵⁾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동 일괄개정법률안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포함되었으나 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되었음.

○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현행법 제5조,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2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임(참고자료: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실적 참조).

4) 2022년 발표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① 1년 이상 구성되지 않은 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 연평균 본회의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③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았거나 2인 이하인 위원회, ④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속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⑤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치목적·기능·심의대상이 유사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였음.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022.9.30. 발의, 의안번호 제2117676호

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법제도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위원회 의결사항이 법적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는 심의기관 내지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이고, 활동 당시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연평균 1회 이하로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앞에서 설명한 2022년 정부가 제출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15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 우리 위원회 법안 심사 시 비록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지만, 이스포츠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 축소로 비추어질 우려에 대한 지적,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 등에 따라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동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 또한, 현행법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를 때에도 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를 미구성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민간 위원의 위촉 등

6)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3.3.21.) 참조

위원회 구성 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책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⁷⁾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방향 수립 및 사업 집행 시 수시로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적으므로, 필요시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7)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전 위원회 위원의 활용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임.

참 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회의내역

기수	회의일자	방식	안건명
1기 (‘18.4월 ~ ‘20.4월)	2018.4.25.	대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제1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18~2022) 심의
	2018.12.21.	대면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차세대 여권 디자인 확정 및 적용 계획 보고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보고
	2020.3.27. ~4.3.	서면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 보고
2기 (‘20.7월 ~ ‘22.7월)	2021.4.2. ~4.9.	서면	2021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보고
	2021.12.22. ~12.27.	서면	2020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2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추진계획 보고 공공디자인 부처 컨설팅 추진계획 보고
	2022.3.8. ~3.15.	서면	2022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 심의 제2차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 추진 보고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국경비	사업경비
2022년	10,000	10,000	-	-	1,400	1,400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 별도 예산편성액은 없음 (공통경비에서 집행)